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8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성원·강선영

박준태 • 곽규택 • 강승규

이양수 · 서지영 · 이헌승

서천호 · 김상욱 · 김용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.

반면,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,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 강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장의 제목 중 "전담공무원"을 "전담공무원 등"으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내용·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	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		
전담공무원	전담공무원 등		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보건의료 취약지역		
	<u>방문진료사업) ① 국가와 지방</u>		
	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		
	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		
	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		
	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		
	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		
	<u>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</u>		
	<u>다.</u>		
	② 제1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		
	의 내용・기준 및 방법 등에		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
	<u> 정한다.</u>		